

특별명예퇴직에 따른 보수·복지 관련 안내

목 차

1 명예·법정퇴직금 (퇴직연금)

2 급여 정산

- 초과/휴일·현장·야간가산/연차수당, 인사평가 소급분

3 실업급여 (고용보험)

4 국민연금

5 건강보험

6 업무용 전화 명의변경

7 복지 관련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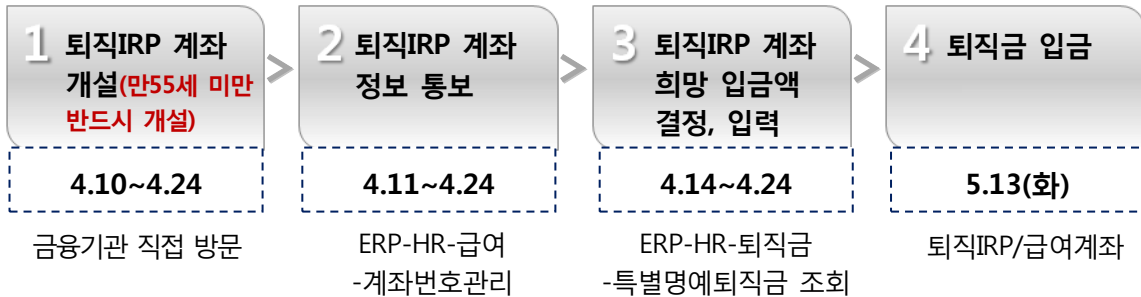
- 대부금, 연금저축, 상호부조, 상조회비, 장제용품,
복지포인트, 장제용품, 우리사주, 단체보험,
건강검진, 심리상담, 기타

붙임 : 보수·복지 관련 문의처

2014. 4

1 명예·법정퇴직금

□ 처리절차



- ✓ 관련법에 따라 만55세 미만 퇴직직원의 퇴직금은 '퇴직IRP계좌'로 의무 이전
- ✓ 만55세 이상 퇴직직원의 퇴직IRP 또는 급여계좌 중에서 선택 가능

※1. IRP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, 개인형퇴직연금제)

- 근로자의 퇴직금 운용을 위한 계좌로 퇴직금을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운용하고 퇴직금과 운용수익금을 연금으로 수령(현재는 일시금 수령도 가능) 할 수 있도록 설정되는 계좌
- 재직기간 중 추가 가입 가능한 '적립IRP'와 퇴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 [특별명예퇴직금 포함 가능] 운용을 위한 '퇴직IRP'로 구분. 퇴직시 '적립IRP' 적립액은 '퇴직IRP'로 의무 이전
- 퇴직금을 '퇴직IRP'로 이전 시 퇴직소득/주민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고 퇴직IRP 계좌로 함께 이전하여 추가 수익금 기회 발생
- 55세 이상, 수령기간 5년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연금으로 수령 가능.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/주민세 3.3%, 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/주민세 5~8% 원천징수

<퇴직연금 수령절차>



※2. 관련법령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4항)

퇴직 등에 의해 발생하는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
계정으로 하는 방법으로 한다. 다만,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
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※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항에서 제17조 제4항을 준용

만55세 미만 (1959년 5.1일 이후 출생)	만55세 이상 (1959년 4.30일 이전 출생)
퇴직IRP	퇴직IRP 또는 급여계좌 중 선택

□ 세부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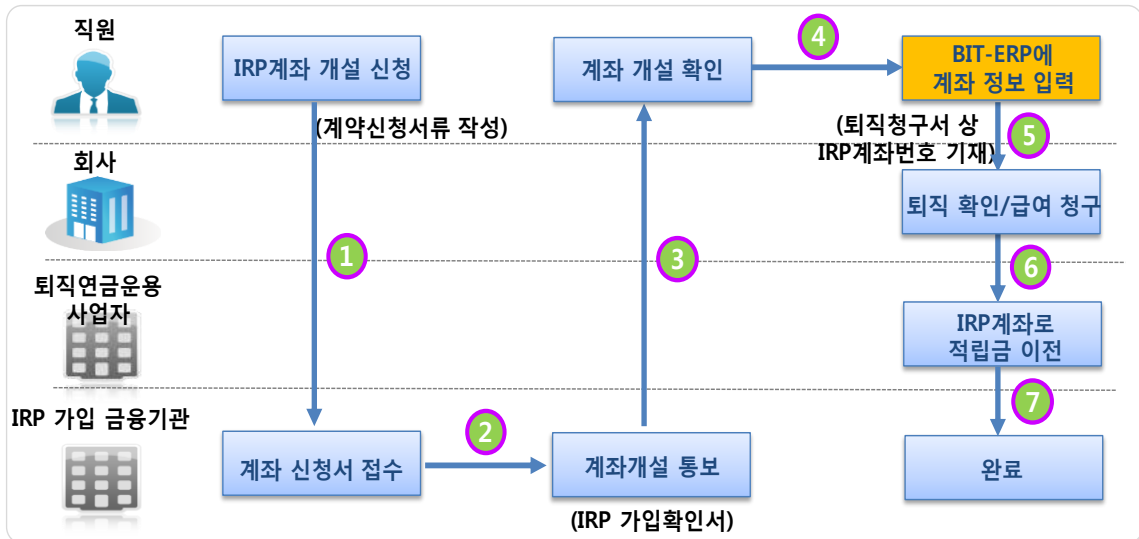
○ 퇴직IRP 계좌 개설

- 방법 : 퇴직자가 희망하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'퇴직IRP' 계좌 개설
- 지참서류 : 신분증(주민등록증 등)
- 기한 : 2014.4.24(목)
 - 신한은행 퇴직연금 담보대출자는 신한은행으로만 IRP 가입 가능

○ 퇴직IRP 계좌정보 입력 및 제출

- 통보방법
 - ① 시스템 입력 : BIT ERP>HR>개인업무>급여>계좌번호 관리
 - ※ 보험사에 '퇴직IRP'를 가입한 경우, 시스템에서 계좌 검증절차가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 일정 내 처리를 위해 정확히 입력 요망
 - ② 계좌사본 제출 : 퇴직신청서 제출시 첨부하여 인사담당자에게 제출
- 기간 : 2014.4.11~4.24('퇴직IRP' 계좌 개설 후 즉시)

<퇴직 IRP 계좌 개설 절차>



○ 퇴직IRP계좌 입금 희망액 입력

- 취지

- 퇴직IRP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은 부분 인출이 불가하며, 계좌 해지를 통한 일시금(전액) 수령만 가능(연금 수령 불가)
- 부분적 자금 소요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 특별명예퇴직금을 퇴직IRP 계좌와 급여계좌로 분리 입금

- 입력방법 : BIT ERP > HR > 개인업무 > 급여 > 퇴직금 >

특별명예퇴직금 조회 > 퇴직금수령방법 선택

- 필요자금을 고려하여 선택가능(※ 미선택시는 전액 IRP 계좌로 입금)

구분	일시금 수령
급여계좌(전액 입금)	특별명예퇴직금 전액을 급여계좌로 입금
퇴직IRP(전액 입금)	특별명예퇴직금 전액을 IRP로 입금
퇴직IRP(부분 입금)	특별명예퇴직금 중 일부 금액을 IRP로 입금

※ 급여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입금

- 입력기간 : 2014.4.14~4.24

□ 퇴직금 입금

○ 입금일 : 2014.5.13(화)

○ 지급액 : 법정퇴직금 + 특별명예퇴직금 - 대부금 - 압류금

- 급여압류 및 대부금 공제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은 회사에서 원천징수
- kt동우회 평생회원에 가입한 경우 22만원을 퇴직금 지급시 추가 지급
- * 2014.5.13일 최종 급여 정산액에서 22만원을 공제하여 동우회에 대납

○ 퇴직금 조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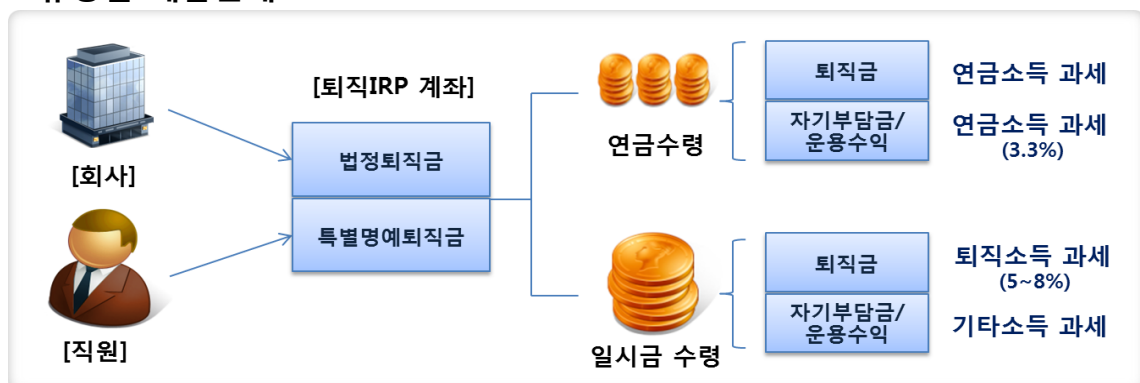
- 퇴직일 이전 : BIT-ERP > HR > 개인업무 > 퇴직금 > 특별명예퇴직금 조회
- * 조회 화면의 법정퇴직금은 3월말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추후 퇴직일 기준으로 2013년 인사평가 및 4월 복무를 반영하여 재산정 예정
- 퇴직금 지급일 이후 : KT Lifeplan(www.ktlifeplan.com)
- * Lifeplan 미가입자는 사번/휴대폰번호 인증을 통해 가입 가능

□ 퇴직IRP계좌의 퇴직금 수령

○ 수령방법 :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

- 연금수령 조건 : 만55세 이상이며, 연금 수령기간 5년이상
- ※ 연간연금수령 한도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가입 금융기관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수령 조건 확인 필요
- 일시금의 실수령 시기 : 퇴직IRP 일시금 신청 후 최대 1주일 소요
- ※ 금융기관 및 가입상품에 따라 소요기간 상이. 가입 금융기관에 문의

○ 유형별 세금관계



<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비교>

구 분	연금 수령	일시금 수령
세금	연금소득세(3.3%)	퇴직소득세(5~8%)
과세 처리	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한 연간 연금액이 1,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분리과세, 1,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 과세	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

※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

산출 방법		
퇴직 급여액	퇴직급여액(법정퇴직금, 특별명예퇴직금)	
과세표준 (안분전)	퇴직급여액-퇴직소득공제 - 퇴직소득공제=퇴직급여액의 40%+근속연수공제액(아래표 참조)	
과세표준 (안분후)	2013년 이전	2013년 이후
	과세표준(안분전)× 2012년까지 근속연수비율	과세표준(안분전)× 2013년 이후 근속연수비율
산출세액	(과세표준 ÷ 근속연수) × 소득세율 × 근속연수	(과세표준 ÷ 근속연수 × 5) × 소득세율 × 근속연수 ÷ 5
결정세액	산출세액 - 기납부세액	

<근속연수공제표>

근속연수	퇴직소득공제액
1~5년	30만원 × 근속연수
6~10년	150만원 + 50만원 × (근속연수 - 5년)
11~20년	400만원 + 80만원 × (근속연수 - 10년)
21년 이상	1,200만원 + 120만원 × (근속연수 - 20년)

<세율 및 누진공제>

과세표준	세율	누진공제액
1,200만원 이하	6%	0
4,600만원 이하	15%	108만원
8,800만원 이하	24%	522만원
3억원 이하	35%	1,490만원
3억원 초과	38%	1,940만원

당부/유의사항

- ✓ 퇴직IRP 정보 입력 시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정확히 입력
 - 오류가 있을 경우, 금융기관 및 계좌 확인 등의 수정 작업으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이 지연
- ✓ 특별명예퇴직금을 급여계좌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IRP 입금액 입력
 - 퇴직IRP로 입금된 금액은 부분인출 불가, 필요자금 제외한 금액 입력
- ✓ 대부금이 있는 경우, 특별명예퇴직금에서 공제
- ✓ DC형/혼합형 가입자의 경우 2014. 5.13일 이후 퇴직IRP계좌로 이전
 - 회사부담금은 DC 금융기관에 5.13일 입금되나, 금융기관 및 가입상품에 따라 IRP이체일까지 시일 소요. DC가입 금융기관에 문의
 - DC형/혼합형을 선택한 금융기관과 퇴직IRP계좌가 다를 경우, 퇴직금 지급 일정(5.13)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, 가급적 DC형/혼합형을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퇴직IRP계좌 개설 요망
- ✓ 신한은행 퇴직연금 담보대출자는 신한은행에서 퇴직IRP 가입
- ✓ 급여압류자의 경우, 법원결정문의 압류금액에 따라 실제 이체지급액은 특별명예퇴직금 조회(BIT-ERP) 금액과 다를 수 있음
- ✓ 특별명예퇴직금 조회 화면의 법정퇴직금, 공제금액(대부금, 세금, 압류금)은 3월말 기준으로 실제 퇴직금 지급액과 다소의 차이 발생

2 급여 정산

□ 지급항목

구 분	대상 및 기준
연차수당	• 2014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잔여 연차휴가 • 산식 : $\text{기준연봉월정액} \div 209 \times 8\text{시간} \times \text{미사용일수}$
초과수당	• 2014. 4월 근무분 정산 지급 • 산식 : $\text{기준연봉월정액} \div 209 \times 1.5 \times 23\text{시간}$
휴일수당	• 2014. 4월중 발생한 휴일근무 정산 • 기준 : $\text{기준연봉월정액} \div 209 \times 1.5 \times 8\text{시간} \times \text{휴일근무일수}$
야간가산 (교대근무)	• 2014. 4월중 발생한 야간근무(교대근무자) 정산 • 기준 : $\text{기준연봉월정액} \div 209 \times 0.5 \times \text{야간근무시간}$
현장가산	• 2014. 4월중 15일 이상의 현장근무에 초과가산 정산 - 현장근무 : 전주상에서 또는 지하에서 케이블 포설 및 선로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한 자 • 기준 : $\text{기준연봉월정액} \div 209 \times 1.5 \times 7\text{시간}$
인사평가 소급분	• 2013년 인사평가 인상률 적용 - 인상률 반영비율 : 2013년 50%, 2012년 30%, 2011년 20% • 소급항목 : 기준급, 역량급, 초과수당, 성과급 인상분

□ 지급일 : 2014.5.13(화)

□ 지급계좌 : 급여계좌

※ kt동우회 가입신청서 제출자는 2014.5.13일 지급 예정 급여에서 평생회원지원금 (22만원)은 공제하여 동우회에 대납

□ 문의처 : 경영지원실 경영지원담당 보수팀(기관별 담당자 첨부 참조)

3 실업급여(고용보험)

□ 실업급여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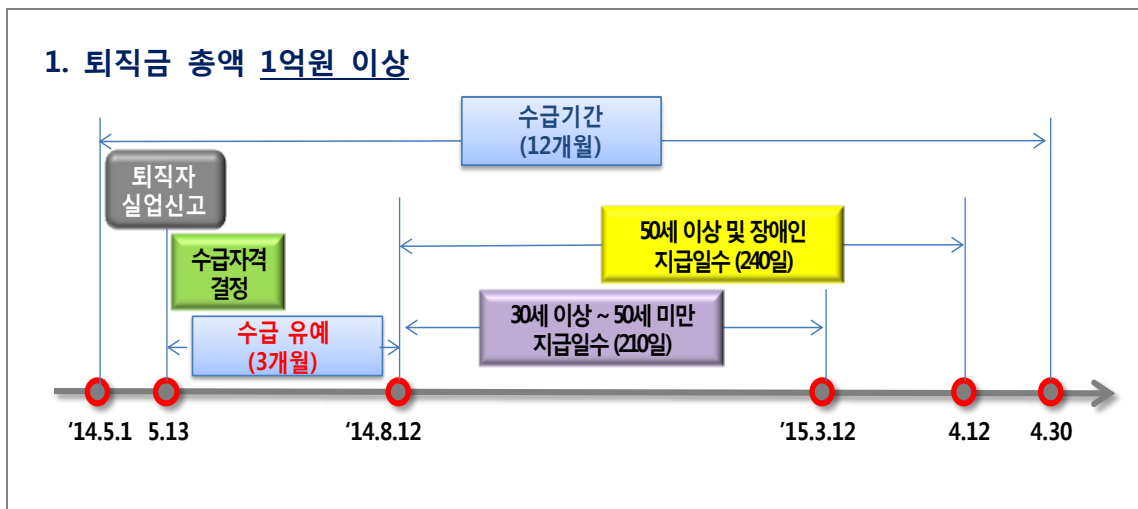
- 1일 수급액 : 일 평균임금의 50%(1일 최고 40,000원)
- 수급일수 :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
 - ※ 퇴직금총액(특별명예퇴직금 포함)이 1억원 이상일 경우,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수급 유예

만30세 이상~만50세 미만	만50세 이상 또는 장애인
210일	240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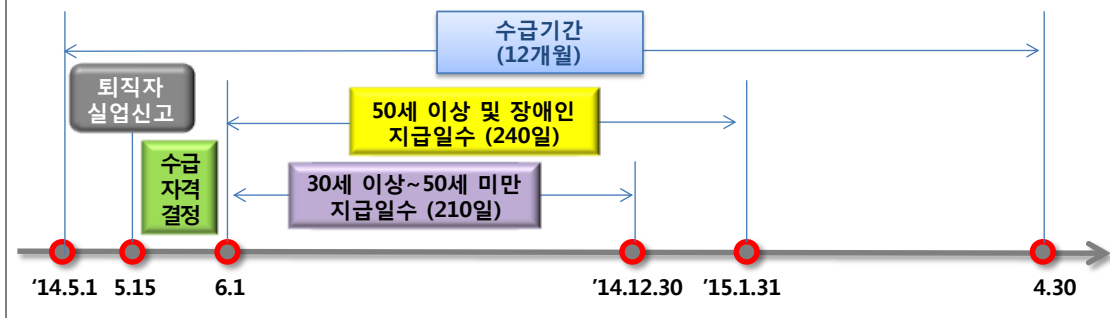
□ 신청절차 및 방법

- 신청절차 : 퇴직자 실업신고(퇴직자) → 수급자격 결정(14일 이내)
→ 실업급여 지급(1~4주후)
- ※ 실업신고 후 2주가 되는 날에는 반드시 신고한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함
- 신청기간 : 2014.5.13부터
 - ※ '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' 및 '이직확인서'는 회사에서 노동부에 제출(5.13)
- 신청기관 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(☎1350, www.ei.go.kr) 방문, 신청

<퇴직금총액별 지급절차(5.13일 실업급여 신청시)>



2. 퇴직금 총액 1억원 미만



당부/유의사항

- ✓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
 -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(수급기간)이 경과하면 수급자격 상실되므로 5.14일 직후 지체 없이 신청 필요
- ✓ 수급자격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로 반드시 출석
 -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음
 - ※ 단, 취업 또는 구입자와의 면접 등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불가피하게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음
- ✓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'1인 영업점' 개설할 경우 수급자격 상실
 - ※ 단, 재취업시점에 따라 미지급 금액의 일부(수급액의 1/3~2/3)를 '조기 재취업수당'으로 받을 수는 있음
 - ☞ 조기 재취업수당의 지급조건은 연령 및 재취업형태에 따라 다르므로, 신고한 고용센터(☎1350)에 문의

4 국민연금

□ 계속 불입여부 결정

- 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불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으며,
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자로 계속 불입 가능

* 임의가입자제도란?

국내에 거주하고 18세 이상 60세미만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
될 수 없는 사람이 의무가입이 아닌 본인이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
제도로 89,100원~358,200원까지 가입자가 선택하여 가입 가능

☞ 임의가입자 신청방법

- 신청기한 : 퇴직 후 2개월 이내
-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접 방문 신청
(☎1355, <http://www.npc.or.kr>)

□ 연금수령 요건

노령연금	조기노령연금
• 가입기간 10년이상, 연령 60세에 도달한 자가 65세 이전까지 소득이 없는 경우	• 가입기간 10년이상,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, 60세 도달 전에 청구한 경우

□ 수급개시 연령(경과규정)

생년	노령연금	조기노령연금
1953~1956년생	61세	57세
1957~1960년생	62세	58세
1961~1964년생	63세	59세
1965~1968년생	64세	60세
1969년생 이후	65세	56세

5 건강보험

□ 건강보험 관계

- 퇴직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
- 상실신고 : 회사에서 상실 공단에 자격상실 신고(2014.5.13)

□ 건강보험 유지·전환 방법

☞ 제도별 유리한 순서 : 피부양자 등재 > 임의계속가입 > 지역가입

방법구분	요 건
피부양자 등재신고	• 대 상 : 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• 신청절차 - 동일세대원인 경우 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등재 -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: 부양자가 공단으로 등재신고 (공단홈페이지/전화/방문)
임의계속가입	• 대 상 :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높을 경우 • 가입혜택 : 2년간 직장보험료 적용, 피부양자 등재 ※ 2년 후, 임의계속가입 자격 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• 신청절차 ① 관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 우편 발송(안내문에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비교되어 있음) ② 임의계속가입 보험료가 유리할 경우, 안내문의 신청기한내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, 신청
지역가입자 자격취득	• 대 상 : 피부양자등재 및 임의계속가입하지 않은 경우 • 가입절차 : 대상자의 경우 공단에서 주민등록주소지 지역가입자로 자동 편입되어 지역보험료 부과 ※ 지역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짐

☞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시 건강보험공단에서 '임의계속가입'과 '지역가입'의
보험료를 비교하여 안내

□ 신청·문의 :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(nhic.or.kr ☎1577-1000)

6 업무용 전화 명의변경

- 명의변경 절차 : 4.30일 일괄 전산처리 예정
※ 5.1일 이후 요금제, 납부 방법 등 변경 가능(문의처 : 고객센터 100번)
- 주의사항 : **명의변경 이후, 본인이 원하는 요금제, 납부 방법 등 변경 필수**

□ 변경 세부내용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
명의자	케이티	<u>개인명의</u>	
요금제	KT업무지원용(3G)	피쳐폰	표준(11,000원)
		스마 (3G)	i-슬림(34,000원)
		트폰 (LTE)	LTE-340안심차단(34,000원)
요금납부 방법	개인별 상이 (자동이체, 신용카드 등)	<u>지로납부</u> (매월 25일)	
명세서	이메일	<u>우편</u>	
우편주소	N-STEP에 반영된 주소	<u>“좌동”</u>	
부가 서비스	개인별 상이	<u>일부 부가서비스 이외 전체 해지</u> (※유지되는 부가서비스 - 발신번호표 시무료, 정보제공사업자번호차단, 음성 사서함, 통합사서함)	

※ 패드는 일괄 해지처리(5.7일 예정)

- 문의처 : 경영지원실 경영지원담당 경영지원팀(031-727-2684)

7 복지제도

구 분	일 정	내 용
대부금	'14.5.13 (공제일)	- 주택자금, 생활안정자금, 대학학자금 대부금은 특별명예퇴직금에서 일괄 공제 • '03. 9월 이전 대학학자금을 대부하여 미상환액이 있는 직원에게는 대부금 상환 후 실납입액의 75% 지급(5.13일 예정) • 문의 : 보수팀(기관별 담당자 첨부 참조) ※ DC/혼합형 가입자는 상환 방법 개별공지
연금저축	'14.4.25 이후	- 자동이체 등을 통해 가입 금융기관 직접 납부 ※ 만 55세 이전 해지시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(20%)+주민세(2%) 부과 • 문의 : 보수팀(기관별 담당자 첨부 참조)
상호부조	'14.5.13 (미수혜자 환급금 지급일)	- 상호부조 미수혜자는 본인 납입금액*1.1배 지급 • 예상환급금 : 61.6만원 (5.13일 지급) ※ 상호부조 1회 이상 수혜자는 환급금 미지급 • 문의 : 보수팀(기관별 담당자 첨부 참조)
상조회비	'14.4.25 이후	- 자동이체 등을 통해 가입상조회사 직접 납부 • 문의 : 다운플랜 (☎1577-1555) 및 개인 가입 상조회사
장제용품	퇴직후에도 지원	- 퇴직시 300인분 기준 장제용품(종이컵 등 일회용품) 지원 • 지원조건 : 본인/배우자, 본인/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사망시 • 신청문의 : 다운플랜(☎1577-1555)
잔여 복지포인트	'15.12.31 (유효기간)	- 잔여 복지포인트는 '15.12.31일까지 사용 가능 • 포인트 내역 확인 : kt복지몰(kt.ibene.co.kr)>나의복지>복지포인트 - kt패밀리카드(복지카드)는 신용카드로 사용 가능 • 문의 : 복지팀(☎031-727-4037)

구 분	일 정	내 용
우리사주	'14.5.13 (개인계좌 입고)	- 별도 인출 요청 없이 보유수량을 개별 계좌(삼성증권)로 입고 • 입고일 : 5.13(화) • 우리사주 보유내역 확인 : BIT-ERP>HR>개인업무>복지후생>우리사주 • 문의 : 보수팀(기관별 담당자 첨부 참조)
단체보험	'14.12.31 (유효기간)	-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지급 • 본인 및 배우자 재해사망/후유장애 : 1억원(배우자는 일반 사망도 1억원 지급) • 본인 및 배우자 암진단 : 1,500만원 • 본인 및 가족(가입가족 限) 입원 시 입원비용의 90% 지원 - 신청방법 : 동우기획(☎02-755-1004, Fax : 0502-755-1004)
건강검진	'14.10.31 (검진종료일)	- 2014년 건강검진 포인트 지급 : 본인(15~30만p) 및 배우자(15만p) 건강검진 포인트 지급(4.7일 지급) • 4월말 검진병원 선정 후 해당 병원에서 검진 실시(비용은 현장 결제) ※ 퇴직 후에도 KT기준 단가로 본인 및 배우자 건강검진 가능(상세사항은 Life Plan, KT동우회 등을 통해 공지) • 문의 : 안전보건팀(☎031-727-2681)
심리상담	'14.12.31 까지	- 지원대상 : 2014년도 퇴직자 및 직계가족 • 신청방법 : 해아림 심리상담센터 (☎1577-1402, e-mail : hae-a-lim@kt.com)
기타	'14.4.30 (신청 마감일)	- 2014년 4월 30일까지 학자금, 경조금, 의료비, 건강검진 병원 선택 등 미신청 항목 신청 • 신청 경로 : BIT-ERP>HR>개인업무>복지후생 ※ '14.5.1일 이후 신청 불가 • 문의 : 복지팀(☎031-727-4037)

[붙임] 보수·복지 관련 문의처

- 업무구분 : 급여, 퇴직금, 실업급여(고용보험), 건강보험, 국민연금, 상호부조, 연금저축, 대부금 상환, 중·고학자금, 우리사주
- 부 서 명 : 경영지원담당 보수팀

구분		연락처	팩스번호
Customer 부문	부문예하, 수도권강남, 제주	031-727-2583	0303-0991-5405
	수도권강북, 전북	031-727-2582	0303-0993-2336
	수도권서부, 강원	031-727-2588	0303-0993-1494
	부산	031-727-2589	0303-0992-7212
	대구, 전남	031-727-2585	0303-0993-1080
	충남	031-727-2592	0303-0992-2444
	충북	031-727-2587	0303-0992-2105
마케팅부문	예하기관	031-727-2586	0303-0991-9419
G&E부문	예하기관	031-727-2592	0303-0992-2444
네트워크 부문	부문예하, 강북, 강남, 호남, 부산	031-727-2581	0303-0992-5521
	충청, 대구	031-727-2589	0303-0992-7212
융합기술원	예하기관	031-727-2593	0303-0990-3695
기타 부문/실	예하기관	031-727-2593	0303-0990-3695

- 업무구분 : 복지기금(경조사비, 대학학자금, 교육보조비, 의료비), 우리사주, 단체보험

구분		부서명	연락처	팩스번호
복지기금	전 기관	복지팀	031-727-4037	0303-0992-2545
복지포인트	전 기관	복지팀	031-727-4037	0303-0992-2545
우리사주	전 기관	복지팀	031-727-2476	0303-0993-4685
건강검진	전 기관	안전보건팀	031-727-2681	0303-0993-4888
심리상담	전 기관	심리상담센터	1577-1402	0303-0993-6038

○ 기타 외부기관 문의처

구분	업무	기관명	문의처
건강보험	건강보험 상실, 취득 등	건강보험관리공단	1577-1000
국민연금	국민연금 상실, 전환 등	국민연금관리공단	1355
실업급여 (고용보험)	실업신고, 실업급여 신청 등	고용센터	1350
단체(실손)보험	단체보험 신청	동우기획	02-755-1004
우리사주	사주 인출	삼성증권	1588-3305
장제용품	퇴직후 장제용품 지원	다운플랜	1577-1555